

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90일
신청인	기관 또는 단체명	성명(대표자)
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전화번호	팩스번호
	주소(소재지)	

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 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.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.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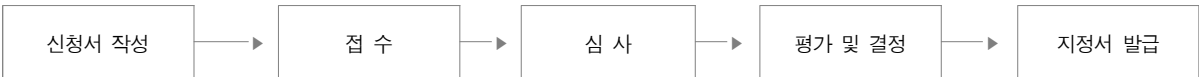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

행 정 안 전 부 , 지 방 자 치 단 체